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발의연월일	2025. 5. 15.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외 24명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5. 15.

발의자: 김민성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의원(25명)

1.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원에 달하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르면 제품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될 수 있음. 현재 국내 담배 제품에는 일부 유해 성분만 제한적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발암 물질 및 중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포괄적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회원국들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 정책과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한 비준국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구미시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와 제품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이행과 정부와

관계기관의 금연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2. 주요 내용

-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촉구
-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직·간접적인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 촉구
-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3. 참고사항

- 결 의 안 : 붙임
- 발 송 처 : 대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전국시군구의회, 전국시도의회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이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정 손실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흡연 피해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공적 대응으로서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중요한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원에 달하며,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만 8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저타르’, ‘마일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해성을 축소·은폐해 왔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으로서 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정책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금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구미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9일

구 미 시 의 회